



주구어지, 씨쉬 생물 과학기술 (상해) 유한공사 VS 지얼생화 (상해) 유한공사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4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4)沪一中民五(知)终字第74号
판결 일자	2014년 7월 21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지얼생화 (상해) 유한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주구어지, 2. 씨쉬 생물과학 (상해)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영업비밀	장기간 거래관계를 형성한 4곳 특수고객과의 거래정보		
키워드 (Keyword)	고객명단(客户名单), 특수 고객정보(特殊客户信息), 공증서(公证书), 대질(质证), 접촉(接触), 합법적 근원(合法来源)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지얼생화 (상해) 유한공사(이하 ‘지얼생화’) 공사는 1998년 설립된 아미노산과 폴리펩티드 계열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2009년 11월 12일 원심 피고 주구어지는 지얼생화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국제판매 부총재를 담당하였다. 2013년 2월 25일 주구어지는 지얼생화 공사를 떠났고, 씨쉬 생물과학 (상해) 유한공사(이하 ‘씨쉬공사’)로 가서 총경리의 직무를 담당하고, 국내외 무역과 시장개발 업무를 겸직하였다.

지얼생화 공사는 양부어 공사, PH공사, Neuland 공사, Almac 공사, 이렇게 4곳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고객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고객명단에는 고객의 교역습관, 교역요구, 가격 수용능력, 심지어 고객사 주 담당자의 개인 성격 등 공지정보와 구별되는 특수 고객정보이다.

주구어지는 이와 같은 특수고객정보를 가지고, 씨쉬공사로 가서 4곳 특수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아미노산과 폴리펩티드 계열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지열생화 공사는 원심 피고들에게 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지열생화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	원심 피고(상소인)
4곳 특정고객 명단이 상업비밀을 구성한다.		4곳 특정 고객 명단은 공개된 정보이므로 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 피고들의 유인 메일 발송 행위가 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주구어지는 자신의 이직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한 것이고, 특정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씨쉬공사와의 교역을 원했다.
원심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

04 판결 요지

본 사건 관련 4곳 고객은 지열생화 공사와 장기간 상품공급 관계에 있었고, 특정한 교역 습관과 교역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하여 개발한 고객 정보는 시간, 인력, 물력 및 재력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사건 관련 고객 명단은 상업비밀을 비밀성, 보안성, 가치성 요건을 구비하여, 상업비밀로 보호 되는 고객명단을 구성한다.

상업비밀 침해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일(실질적 동일)+접촉-합법적 근원’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본 사건에 있어서, 양 측의 고객명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주구어찌가 지열생화 공사 재직시절 관련 고객 명단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씨쉬공사에서 별도로 합리적인 근원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상업비밀 침해여부가 인정된다.

원심이 법정 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하여 확정된 인민폐 15만 위엔의 배상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국 상업비밀 관련 판례에서, ‘고객명단’이 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 판례는, 공개된 경로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단순 고객 정보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 특정고객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4곳 거래처는 원심 원고 지열생화 공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특정고객’에 해당하고, 거래명단에 고객의 교역습관, 교역요구, 가격 수용능력, 심지어 고객사 주 담당자의 개인 성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상업비밀성이 인정되었다.

본 판결은, 상업비밀 침해여부 판단의 기준을 “동일(실질적 동일)+접촉-합법적 근원”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 피고들의 행위가 위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보고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중국 권리침해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증거의 수집과 제시 및 증거 공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판결문에는, 증거 공증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볼 만하다.
